

『(재)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9월 26일

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

2016년 10월 21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(재)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계획

- 출연 예정액 : 금450백만원(운영비 150백만원, 리모델링 300백만원)

- 출연 필요성

-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구미교육발전 기여
-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출신 수도권 진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 조성

- 출연근거법령

-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(기금 출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○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(재)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에 운영비 150백만원, 리모델링비 30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50백만원의 출연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(재)구미시장학재단에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학숙 1층을 최적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여 입사생의 편의를 도모하고, 학숙 수혜폭을 확대하여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